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활용 근거 마련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05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활용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1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정책·제도·시장·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보·소통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이 에너지 정보의 수집·정리·제공, 에너지 이용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활동, 에너지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교육·홍보 및 민관 협력 등 정보·소통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 집행이나 재정 지원과는 구분되는 정보·소통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활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단으로 하여금 에너지 정책·제도 및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 에너지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국민의 에너지 이용 행태 개선과 정책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역할 및 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정책, 제도 및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정리 및 제공 2. 에너지 기술, 산업 및 생활 에너지

	<u>지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조사·분석 및 이해 증진 활동</u> <u>3. 에너지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u> <u>4. 국민의 에너지 이용 행태 개선과 정책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소통·문화사업</u> <u>5. 에너지 정보 및 정책 전달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의 기획 및 운영</u> <u>6. 에너지 정보·소통 분야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u> <u>7. 다른 법령에 따라 재단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u> <u>8.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석탄, LNG 등 전력 및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확산을 통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고 에너지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1992년 「민법」 제32조¹⁾에 따라 15개 전력 유관기관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에너지정보소통 사업²⁾³⁾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51억 7,800만원을 출연받는 기타공공기관⁴⁾임.

재단은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과학적인 지식보급과 자료의 제작·배포 및 자료실의 설치·운영, 에너지에 관한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그 보급을 위한 출판사업과 전시관의 설치·운영, 초·중등 과학교육에 있어서의 에너지관련 교육의 협력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보급과 자료의 제작, 배포 및 자료실의 설치 운영
- 에너지에 관한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그 보급을 위한 출판사업과 전시관의 설치운영
- 일반국민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 설명회, 문화사업, 시설견학 등의 실시
- 초·중등 과학교육에 있어서의 에너지관련 교육의 협력
- 에너지 개발의 사회적, 심리적 영향 등에 관한 학문적 조사연구
- 에너지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장학사업
- 에너지관련 수출을 위한 해외홍보 등 각종 지원사업
- 정부 또는 에너지관련기관으로부터의 수탁사업
- 원자력, 신재생, 석탄, LNG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 기타 본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 각 호의 부대사업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2) 전력산업홍보(7401-301)사업의 내역사업임.

3) 17개 기관 협업 에너지정책소통센터 운영, 전력 및 에너지정보 국민소통 콘텐츠 제작·확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대상 에너지 인식조사, 글로벌 에너지 동향자료 등 연구자료 작성, 에너지정보관 연계 진로체험교육 등을 실시함.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이 축적하고 있는 노하우와 정보를 활용하는 한편 현재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소통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⁵⁾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특정 기관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치 근거, 조직 및 기능이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공법상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⁶⁾이 입법례상 일반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재단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공법상 기관과는 법적 성격이 상이한바, 해당 재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기관의 법적 성격과 법률상 기능 부여 방식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단의 업무 등에 대한 「에너지법」상 법적 근거 신설은 재단의 장기 비전, 경영상 문제점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현재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의 업무 범위와 기능 등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예컨대,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